[서식 예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(채무변제)

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 ○○.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○○. ○.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에게서 20○○. ○. ○. 금 25,000,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채무자 원고, 채권최고액 금 30,000,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.
- 2. 원고는 2000. 00. 0.부터 2000. 00. 0.까지 5회에 걸쳐 위 차용원금과

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. 그런데 피고는 위 채무와는 별개인 피고에 왕이 소외 ●●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한 보증채무가 남아 있다는 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.

- 3.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설정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등의 포괄근 저당권조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, 피고에 대한 소외 ●●●의 채무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,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상 위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

1. 갑 제2호증 연대보증계약서

1.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변제영수증

1. 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○시 ○ 구 ○ 동 ○ ○ 대 157.4m²
- 위 지상
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4.82m²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, ^^
제출부수	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